

새마을문고 읍·면·동분회 회칙 준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회의 새마을문고○○읍(면·동)분회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) 사무소는 읍·면·동에 둔다.

제3조(목적)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 운영 및 독서문화운동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3.1.28>

제4조(사업)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<개정 2013.1.28>
2. 새마을작은도서관 상호 협력 <개정 2013.1.28>
3. 읍·면·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<개정 2013.1.28>
4.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 정보의 교환 <개정 2013.1.28>
5. 문고지도자 상호간의 친목 도모 <개정 2013.1.28>
6. 시·군·구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7. 기타 분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원칙)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,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. <신설 2005. 4. 12>

제2장 임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과 선임)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 및 해당 새마을문고시군구지부에 등록된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,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문고지도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05.4.12, 개정 2013.1.28>

제7조(회원의 권리 의무, 탈퇴 및 제명) ①본회의 회원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회칙에 정한 임원 선출권, 피선거권,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의 회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
3. 새마을문고 지도자 기본회비의 납부
4. 본회 총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

③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단,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 및 부회장이 탈퇴한 경우에는 본직의 자격도 상실된다. <개정 2013.1.28>

④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회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 4. 12]

제8조(임원) ①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
2. 부 회 장 2인
3. 이사 5인 이내 <개정 2005. 4. 12>
4. 감 사 2인
5. 총 무 1인

②명예회장 및 고문을 둔다.

제9조(임원 선출)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군·구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 또는 문고운동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③임원은 중앙 또는 시도지부 단위의 새마을문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④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10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이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을 겸하는 자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

2005. 4. 12>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에
서 선출된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을 위촉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5.
4. 12>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3. 관내 새마을문고의 지도·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

④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<개정 2013.1.28>

⑤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
관리한다.

제 3 장 총 회

제12조(총회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총회로 한다. <개정 2005.
4. 12>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③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④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분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
한다.

⑦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
⑧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
한다.

제1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1. 임원의 선출

2.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4.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분회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
④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제 4장 상벌 및 윤리위원회

제15조(상벌 및 윤리위원회)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회원이 본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
③징계는 경고·해임·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 및 해임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.

④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포상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<본조신설 2005. 4. 12>

제 5장 사업계획 및 회계

제16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시·군·구지부에서 정하는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년도 개시 2개

월 이내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17조(회계) ①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 <개정 2005. 4. 12>
2. 임원의 출연금 <개정 2005. 4. 12>
3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
4. 기타 수익금

②회계지출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집행된다.

제18조(사업보고 및 결산) ①사업결과보고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,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초 2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전항의 경우 시·군·구지부 회장은 결산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4. 12>

제 6 장 보 칙

제19조(법령규정의 준용)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년 4월 2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본 회칙 개정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시·도, 시·군·구지부 회

장의 1차 임기 만료일(2001년 정기총회)까지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년 7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2년 4월 6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5년 4월 12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